

문서번호	광진구의회-1272
결재일자	2016.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의회홍보팀 장	의회사무국 장		
오승준	지준호	02/22 최근수		
협 조				

보도자료 제출(2016.2.17)

■ 보도자료 2건

연번	제 목
1	『광진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17일 개최』 - 2.17 개최, 24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의결 -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23건 상정안건 심의
2	『광진구의회 임병주의원 공식 의정활동 시작』 - 17일 개최식 의원선서,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식적 의정활동 돌입 -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결정

의 회 사 무 국

이 보도자료는 2016년 2월 17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의회홍보담당 오 승 준(☎450-1445~7)

제 공 일 자	2016년 2월 17일	사 무 국 장	최 근 수	450-1444
답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사팀)	팀 장	이 기 봉	450-1446
사진있음	총 3 매	담 당 자	민 준 현	450-1446

『광진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17일 개최』

- 2.17 개최, 24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의결
-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23건 상정안건 심의

●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2월 17일 오전 11시 제19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 임시회 첫 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위원으로 공영목 구의원, 정병채 세무사, 채종철 세무사, 김영규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2015년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 한편 비례대표 의석승계자인 임병주의원의 의원선서와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소속이 확정되었다.

● 18일에는 연석회의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광진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19, 22, 23일 총 3일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등 23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안문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제195회 임시회 상정안건]

1.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2015회계년도 결산검산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5. 운영위원회 규칙·조례안 9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강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순화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도모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의원 발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 및 상위법령의 제명(題名) 변경(2011.12.21.)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인관리 개선 도모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의원 발의)

☞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강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표창업무 추진 도모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린의원 발의)

☞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강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원 신분증 규칙』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의원 신분증 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도모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범의원 발의)

☞ 「개인정보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정주의로 시행 하고 있고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청원심사 규칙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함.

☞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김기린의원 발의)

본 규정(훈령제14호)은 2006.11.24 조례 제459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상옥의원 발의)

☞ 현재 규정된 회장 글자인 ‘議’ 자를 한글 ‘의회’ 자로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의회별 상이한 회장 사용을 통일하고, 한글사랑 실천 의지와 한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지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관훈의원 발의)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의 사장 및 본부장”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처리 등 의회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6.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등 7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민대상 시행 20년을 넘기면서 구민대상 조례의 목적과 수상대상, 추천 분야 및 추천 방법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숨은 봉사자 발굴과 구정참여 분위기를 증진코자함.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의의원 발의)

☞ 대한적십자사의 인동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탄의원 발의)

☞ 지역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광진구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정책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정한 운영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의 개정내용 반영 및 법령사 근거없이 공단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적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 ‘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토록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포상금 한도 적용대상 확대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7.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7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4]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2003년 중세분화 당시 인접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주변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및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해 해당 필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5] 제37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통봉사단체 지원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사진자료 첨부]



▲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최 선언(안문환 부의장)



▲ 의원선서

이 보도자료는 2016년 2월 17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의회

보도자료

문의사항 : 광진구의회사무국 홍보팀 담당 오 승 준(☎450-1445~7)

제 공 일 자	2016년 2월 17일	사 무 국 장	최 근 수	450-1444
담 당 부 서	의회사무국(의사팀)	팀 장	이 종 민	450-1445
사진있음	총 3 매	담 당 자	이 승 산	450-1445

『광진구의회 임병주의원 공식 의정활동 시작』

- 17일 개회식 의원선서,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식적 의정활동 돌입
-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결정

● 2월 17일 오전 11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병주의원이 처음으로 등원하여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가운데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 임병주의원은 지난 1월 27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기선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석승계자로 결정통보되었고, 2월3일자로 광진구의회사무국에 등록하였으며, 17일 오전 동료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진행된 선서식을 시작으로 공식적 의정활동에 돌입하였다.

● 한편, 안문환 부의장이 사회를 본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의결하여 임병주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확정하였으며, 2월22일에 열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선 전 의원이 역임하였던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 이날 인사말에서 임병주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벅찬 도전의식을 느낍니다. 막중한 소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여민동락의 정신으로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력하나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사진자료 첨부]

